

# 環境庁告示 · 公告

##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설정 및 사용지역

- 환경청 告示 88-14 호 -

환경보전법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“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8년 4월 1일

### 환경 청장

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기준 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

제 4 조중 제 2 항을 제 4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,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(2) 제 1 항제 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중 별표 2의 사업자는 동표의 조건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(3) 제 1 항제 1호, 제 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중 별표 3의 사업자는 동표의 조건으로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.

별표 2,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〔별표 2〕

#### 연료 사용 조건

소재지	발전소명	유황함유량	사용량
부산 직할시	부산화력	2.5%이하	전체 유황함유량 이 2.5%(B-C유 증량기준)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B-C 유와 석탄을 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여수시 호남화력	여수화력 호남화력	2.5%이하	전량

### 〔별표 3〕

#### 연료 사용 조건

소재지	발전소명	유황함유량	사용량
서울	서울화력	0.3%이하	전량
특별시 인천 직할시	인천화력	1.6%이하	전량 LNG를 사용 하되 LNG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하여 일부 유황 함유량 1.6% 이하의 B-C 유를 사용할 수 있다. 1.6%이 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(1)LNG 공급중단 사고시 (2) 하절기 등 전 력수요 성수기, 발전량 증가시 및 기타 필요 시 (3)(2)의 경우 총 사용 에너지량 의 15% 한도 내

### ○ 환경청 고시 제 88-15 호

88 서울 올림픽기 간증 서울지역 대기배출시설의 연료사용 변경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년 4월 1일

환경청장

---

## 88 서울올림픽기간중 서울지역 대기배출 시설의 연료사용변경조치에 관한 고시

**제 1 조 (목 적)** 이 고시는 환경보전법 제27조 및 동법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88 서울올림픽기간중 서울지역내의 대기배출시설중 유황분 1.0% (wt%)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할 대상시설과 사용자 및 공급자의 준수사항등 연료사용 변경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대상시설)** 1988년 8월 16일 현재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에서 B - C 유를 연료용 유류로 사용하는 시설은 “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 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” 중 제 4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황분 1.0%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 3 조 (사용기간)** 유황분 1.0%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1988년 8월 16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.

**제 4 조 (사업자의 준수사항)**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제 3 조의 기간중에 유황분 1.0% 이하의 저유황유가 아닌 유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미

리 재고량 또는 수급조정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.

2. 제 3 조의 기간중에 사용할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황분 1.0%이하의 저유황유인지의 여부를 공급자로부터 확인받을 것.
3. 제 3 조의 기간중에 사용한 유류의 수급대장을 별표 1의 양식으로 1988년 12월 31일 까지 유지하고 관계공무원의 자료요구에 응할 것.

**제 5 조 (공급자의 준수사항)**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내에 B - C 유를 공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대상시설에 공급하는 B - C 유가 유황분 1.0% 이하의 유류임을 확인하고, 사용자에게 공급시마다 이를 세금계산서등 전표에 명시할 것.

2. 유황분 1.0%이하의 B - C 유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에 우선 공급하여 사용자의 수급상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

### 부 칙

**1. (시행일)**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2. (유효기간)** 이 고시는 1988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 \*

---

